

- 2022년 제1회 -

**광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광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8월 11일

광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I 채용분야**

채용분야	직급	인원	임기	시간	담당업무
합계		2명			▶ 일반임기제 2명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 40시간	[입법·예산 등 행정분야] ▶ 의원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 의정활동 지원 - 조례 제·개정, 폐지 - 예산 심의, 결산 승인 등 - 행정사무감사·조사 ▶ 정책 및 예산 분석 ▶ 의원연구단체 및 의원정책개발 지원 업무 ▶ 의회민원 처리 및 주요사안 간담회 업무 ▶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의원 관련 업무 보좌

채용분야	직급	인원	임기	시간	담당업무
정책지원관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 40시간	<p>[도시계획·도시정비·토목·건축 등 시설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li> <li>▶ 의정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제·개정, 폐지</li> <li>- 예산 심의, 결산 승인 등</li> <li>- 행정사무감사·조사</li> </ul> </li> <li>▶ 정책 및 예산 분석</li> <li>▶ 의원연구단체 및 의원정책개발 지원 업무</li> <li>▶ 의회민원 처리 및 주요사안 간담회 업무</li> <li>▶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의원 관련 업무 보좌</li> </ul>

## II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서류접수시 제출서류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요건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임용예정 분야	자 격 기 준
정책지원관 (행정분야)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ol> <p>※ 1~3호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회,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입법 및 입법 지원(입법 관련 연구·조사·분석 등) 업무, 정책 수립, 법무행정, 공공행정, 기획, 회계업무(예산, 결산 및 재정분석 등) 관련 근무한 경력</p> <p>※ 관련분야 학위 : 행정학과, 법학과 등 입법·행정·예산분야의 위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p>

임용예정 분야	자 격 기 준
정책지원관 (시설분야)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ol> <p>※ 1~3호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회,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도시정비, 토목, 건축, 지적, 교통 업무 관련 근무한 경력</p> <p>※ 관련분야 학위 : 도시계획, 도시정비, 토목, 건축, 지적, 교통 등 위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p>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발행기관 직인 등이 명시되어 해당기관·회사 등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발급시 진위여부 확인기간 등이 있는 경우 그 기한 이내)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제출**(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서류전형 심사시(면접 전)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현 근무기관을 포함하여 확인 진행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 경력기간 산정기준 : 주 40시간에 비례, 환산하여 인정

<예시> 근무기간 2021. 1. 1. ~ 2021. 12. 31.(주20시간 근무) ▶ 근무경력 6개월 인정

※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별표6의3)

### Ⅲ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IV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2. 8. 22.(월) ~ 8. 24.(수) /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1:30~13:00) 제외]
    - ※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광주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의회사무국 의정팀에 원서 제출
    - ※ 5급(가급) 1만원 / 6,7급(나급, 다급) 7천원 / 8,9급(라급, 마급) 5천원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사전 유선통화(T.031-760-2664)하여 등기우편 접수 진행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 '2022년 제1회 광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접수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송정동) 우)12738
  - ※ 방문접수 절차 ①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광주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② 원서제출

## V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원서 접수	2022. 8. 22.(월) ~ 8. 24.(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 9. 7.(수) 전·후
면접시험	2022. 9. 14.(수) 전·후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9. 16.(금) 전·후
임용예정시기	2022. 10월 초
※ 세부 면접시험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에서 확인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명단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의회 소식-공지사항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의회 소식-공지사항에 공고) ※ 시험관련 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전화문자 등의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 VI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시간선택제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임용예정 분야	임용직급	연봉액	비고
정책지원관(행정)	지방행정주사보	45,237천원	※ 주 40시간 근무기준
정책지원관(시설)	지방시설주사보	45,237천원	※ 주 40시간 근무기준

- 복무 및 제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별도 적용함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채용 후 연금 지급이 정지됨.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함.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VII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p>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문접수) 광주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광주시청 민원실)</li> <li>(우편접수) 유선통화 후 우편통상환 구입·동봉(우체국 판매)</li> </ul> <p>※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p>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li> <li>관련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li> </ul>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5호)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사항은 삭제)	필수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응시분야만 발체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사항은 삭제)	필수
7.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li> <li>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li> <li>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li> </ul>	필수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공단(<a href="http://www.nhis.or.kr">http://www.nhis.or.kr</a>)에서 발급</li> <li>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li> </ul>	필수
9.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li> <li>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학사석사 학위증명서도 제출</li> </ul>	필수

구 분	내 용	비 고
<p>10. 경력(재직) 증명서  <b>※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연락처 및 팩스번호 필수</li> </ul> </li> <li>○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b>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b></li> <li>○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b>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 분장표</b>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li> <li>○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li> <li>○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b>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b>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하나, 서류상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li> </ul> <p><b>※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b></p>	필수
<p>11. 기타 증빙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면허 소지를 필수화하는 분야의 경우, 운전면허증 사본과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제출</li> <li>○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li> <li>○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li> <li>○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논문 등의 경우 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li> </ul> </li> <li>○ 관련분야 표창(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수여기관,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li> </ul> </li> </ul>	해당자 제출
<p><b>※ 주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li> <li>○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li> </ul>	

## VIII 기타 유의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의회 소식-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된 후 퇴직,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의회사무국 의정팀 (031-760-2664)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다음 표 참조

임용예정 분야	근무부서	연락처
정책지원관(입법·예산 등 행정분야)	의회사무국	031-760-2345
정책지원관(도시계획·도시정비·토목·건축 등 시설분야)	의회사무국	031-760-2333